

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4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되고, 오수·분뇨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「하수도법」으로 전부 개정되어 공포 후 1년 이 경과한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어,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명 변경

「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」

⇒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」

나. 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조문 정비

-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를 「하수도법」으로 변경
- “오수처리시설 등”을 “개인하수처리시설”로 변경
- “분뇨 등 관련영업 및 정화조청소업”을 “분뇨수집·운반업”으로 변경

3. 관계법령

-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(2006. 9.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)
- 하수도법(2008. 2. 29 법률 제8858호)

4. 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(2008. 2. 28 ~ 2008. 3. 19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· 의결(2008. 3. 27)
- 다.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 ·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라. 신 · 구 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”을 “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관하여 「하수도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중 제목 “분뇨 및 축산폐수”를 “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”로 하고, “분뇨 및 축산폐수”를 “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”로 하며, 적정처리시설“을 ”개인하수처리시설“로 한다.

제3조·제4조의 제목 및 제4조제2항 본문중 “오수처리시설등의”를 각각 “개인하수처리시설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규칙제30조제1항, 제59조”를 “규칙제33조제1항”으로 하고, “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(이하 “오수처리시설등”이라 한다)”를 “정화조(이하 “개인하수처리시설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중 “오수처리시설”을 “개인하수처리시설”로 하고, “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”를 “스컴(SCUM) 및 침전찌꺼기 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,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, 풀

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.”로 하며,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 · 동조제3항 · 동조제4항 · 제9조제1항 · 제10조제1항 및 제3항 · 제11조 · 제17조제1항 및 별표3의 “오수처리시설등”을 “개인하수처리시설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중 “법제58조제2항제6호”를 “법 제80조제3항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· 제17조 제목과 제1항 · 제2항중 “정화조 청소업자”를 “분뇨수집 · 운반업자”로 한다.

제6조중 “법 제18조제1항”을 “법 제4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7조중 “법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36조”를 “법제41조제2항 및 규칙제37조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중 “법제18조제3항”을 “법제41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중 “법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”을 “법제41조제1항”으로 하고, “분뇨 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”를 “분뇨수집 · 운반업자”로 하며, 동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중 “청소업자”를 “대행업자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중 “법제18조제4항”을 “법제41조제4항”으로 하고, 동조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동항제3호를 삭제한다.

2.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(오수포함)에 따라 부과한다.

제10조제3항중 “분뇨등 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”를 “분뇨수집 · 운반업자”로 한다.

제11조 “오수 · 분뇨 및 축산폐수”를 “오수 · 분뇨”로 한다.

제15조의 본문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동조제1호의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으로 하며, 동조제2

호의 "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"을 "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제17조제1항중 "동법시행규칙제15조, 제21조 및 제53조"를 "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"로 한다.

제19조제1항중 "법제58조제3항"을 "법제80조제5항"으로 하고, "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"을 "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」"으로 하며, 동조제6항중 "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세부과징수규칙"을 "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세 부과징수 규칙」"으로 한다.

별표3중 "오수처리시설 ·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배출시설"을 "개인하수처리시설"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중 "오수 ·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"을 각각 "「하수도법 제41조제3항」"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 서식중 "오수 ·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"을 "「하수도법」"으로 한다.

별지 제6호 서식 및 제7호 서식중 "오수 ·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"을 "「하수도법」"으로 하고, "비송사건절차법"을 "「비송사건절차법」"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명 :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, 동법 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및 동법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)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매년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3조(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) ① 구청장은 규칙제30조제1항,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오수처리시설,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(이하 "오수처리시설등"이라 한다)의 내부청소가 연 1회이상 실시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명 :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 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관하여 「하수도법」 -----</p> <p>제2조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) -----</p> <p>-----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-----</p> <p>개인하수처리시설 -----</p> <p>제3조(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) ① ----- 규칙제33조제1항-----</p> <p>----- 정화조(이하 "개인하수처리시설"이라 한다)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 개인하수처리시설-----</p> <p>----- 스cum(SCUM)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,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,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.</p>

행	개정안
1.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폐조 등의 스컴 및 침전오니(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)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.	<u><삭 제></u>
2.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는 정상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 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 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폐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.	<u><삭 제></u>
제4조(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 통지)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<u>오수처리시설</u> 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 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·용량·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 하여야 한다.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(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)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 58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오수처리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<u>오수처리시설</u> 둘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<u>정화조 청소업자</u> 에게 위탁할 수 있다.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<u>오수처리시설</u> 둘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 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	제4조(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) ① _____ 개인하수처리시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법제 80조제3항 _____ 개인하수 처리시설 _____ _____ ③ _____ 개인하수처리시설 _____ _____ 분뇨수집 · 운반업자 _____ ④ _____ 개인하수처리시설 _____ _____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분뇨의 수집운반) 구청장은 <u>법 제18조제1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·지역별 7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. 다만,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분뇨의 수집운반) ----- 법 제41조제1항-----</p> <hr/> <hr/> <hr/> <hr/> <hr/>
<p>제7조(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) 구청장은 <u>법 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36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 분뇨수집의무 등의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) -----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-----</p> <hr/> <hr/> <hr/> <hr/> <hr/>
<p>제8조(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) ① 구청장은 <u>법 제18조제3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1에 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수집운반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. ② ~ ③ (생략)</p>	<p>제8조(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) ①----- 법 제41조제3항-----</p> <hr/> <hr/> <hr/> <hr/> <hr/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) ① 구청장은 <u>법 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 및 <u>오수처리시설</u>등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<u>분뇨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</u>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② ~ ④ (생략)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) ①----- 법 제41조제1항 -----</p> <hr/> <hr/> <hr/> <hr/> <p>개인하수처리시설----- 분뇨수집·운반업자-----</p> <hr/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대행업자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정수)</p> <p>① 구청장은 <u>법 제18조 제4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·운반 및 <u>오수처리시설</u>등의 청소수수료(이하 "수수료"라 한다)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<u>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.</u> 3.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(오수포함)에 따라 부과한다. <p>②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토지·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·운반 및 <u>오수처리시설</u>등의 청소를 <u>분뇨등 수집운반업자</u> 또는 <u>정화조 청소업자</u>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<u>청소업자</u>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정수)</p> <p>① ----- <u>법 제41조 제4항</u>----- ----- 개인하수처리시설 ----- -----</p> <p>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(오수포함)에 따라 부과한다.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</p> <p>----- 개인하수처리시설 ----- 분뇨수집·운반업자 ----- ----- 대행업자 ----- -----</p>
<p>제11조(수수료의 납부기한) <u>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·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1조(수수료의 납부기한) <u>오수 및 분뇨</u>----- -----</p> <p>----- 개인하수처리시설 ----- -----</p>
<p>제15조(수수료의 감면)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. <u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. (생략) 	<p>제15조(수수료의 감면) 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 ----- ----- 2. 「<u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			개 정 안			
[별표 3]				[별표 3]			
분뇨 수집·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 청소수 수료 부과기준(제10조제1항 관련)				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 수료 부과기준(제10조제1항 관련)			
(단위 : 원)				(단위 : 원)			
구 분		부과기준	부과금액	구 분		부과기준	부과금액
분 뇨	기본	400ℓ	10,000				비고
	초과	10ℓ당	150				
오수처리 시설단독정 회조 및 축 산폐수배출 시설	기본	0.75m ³	18,810				현행과 같음 개인하수 처리시설
	초과	0.1m ³	1,430				
	지하활증	정화조청소요금	7.0%				
	이기환증	정화조청소요금	7.0%				
비고(생략)				비고(현행과 같음)			

현 행		개 정 안	
<별지 제1호 서식>		<별지 제1호 서식>	
신 규 분뇨 자가수집·운반 변 경 신 고 서 폐 쇄		신 규 분뇨 자가수집·운반 변 경 신 고 서 폐 쇄	
신 고 인	상호(명칭)		
	성명(대표자)	주민등록번호	
주 소		전 화 번 호	
수집 · 운반 대상	소 재 지		
	물 량		
	종 류		
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분뇨 자가수집·운반 [변경] 폐 쇄를 신고합니다.			
년 월 일		년 월 일	
신고인 (인)		신고인 (인)	
마포구청장 귀하			
1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에 한함) 2. 장비 명세서 1부 3.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. 분뇨 자가수집·운반 신고필증(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)			
※ 변경신고의 경우 해당되는 서류 및 기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.			

현 행			개 정 안			
<별지 제2호 서식>			<별지 제2호 서식>			
분 뇨 자 가 수 집·운 반 신 고 필 증			분 뇨 자 가 수 집·운 반 신 고 필 증			
신 고 인	상호(명칭)			상호(명칭)		
	성명(대표자)		주민등록번호	성명(대표자)	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전화번호	주 소		전화번호
수집 운반 대상	소 재 지			소 재 지		
	물 량			물 량		
	종 류			종 류		
<p><u>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</u>의 규정에 의한 분뇨 자가수집·운반 신고필증을 신고합니다.</p> <p>「하수도법 제41조제3항」의 규정에 의한 분뇨 자가수집·운반 신고필증을 신고합니다.</p>						
년 월 일			년 월 일			
마 포 구 청 장 귀 하			마 포 구 청 장 귀 하			

현 행	개 정 안		
<p><별지 제3호 서식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 vertical-align: top;"> <p>제 호</p> <p>수 신 :</p> <p>제 목 : 과태료 처분 통지</p> <p>1.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<u>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</u>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.</p> <p>가. 위반일시 :</p> <p>나. 위반내용 :</p> <p>2.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<u>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3.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</p> <p>첨 부 :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>마 포 구 청 장 (인)</p> </td> </tr> </table>	<p>제 호</p> <p>수 신 :</p> <p>제 목 : 과태료 처분 통지</p> <p>1.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<u>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</u>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.</p> <p>가. 위반일시 :</p> <p>나. 위반내용 :</p> <p>2.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<u>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3.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</p> <p>첨 부 :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>마 포 구 청 장 (인)</p>	<p><별지 제3호 서식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 vertical-align: top;"> <p>제 호</p> <p>수 신 :</p> <p>제 목 : 과태료 처분 통지</p> <p>1.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「<u>하수도법</u>」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.</p> <p>가. 위반일시 :</p> <p>나. 위반내용 :</p> <p>2.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「<u>하수도법</u>」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3.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</p> <p>첨 부 :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>마 포 구 청 장 (인)</p> </td> </tr> </table>	<p>제 호</p> <p>수 신 :</p> <p>제 목 : 과태료 처분 통지</p> <p>1.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「<u>하수도법</u>」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.</p> <p>가. 위반일시 :</p> <p>나. 위반내용 :</p> <p>2.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「<u>하수도법</u>」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3.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</p> <p>첨 부 :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>마 포 구 청 장 (인)</p>
<p>제 호</p> <p>수 신 :</p> <p>제 목 : 과태료 처분 통지</p> <p>1.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<u>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</u>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.</p> <p>가. 위반일시 :</p> <p>나. 위반내용 :</p> <p>2.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<u>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3.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</p> <p>첨 부 :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>마 포 구 청 장 (인)</p>			
<p>제 호</p> <p>수 신 :</p> <p>제 목 : 과태료 처분 통지</p> <p>1.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「<u>하수도법</u>」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.</p> <p>가. 위반일시 :</p> <p>나. 위반내용 :</p> <p>2.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「<u>하수도법</u>」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3.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</p> <p>첨 부 :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>마 포 구 청 장 (인)</p>			

현 행			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
<별지 제6호 서식>				<별지 제6호 서식>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4">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</th> </tr> <tr> <th rowspan="2">신 청 인</th> <th>① 성명</th> <th>(한자)</th> <th>② 주민등록번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3">③ 주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4">과태료 처 분 내 역</th> <th>④ 부과기간</th> <th>⑤ 남부통지서 번 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⑥ 고지 받은 일자</td> <td>⑦ 과태료 금액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⑧ 과태료 처분 사유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			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				신 청 인	① 성명	(한자)	② 주민등록번호	③ 주소			과태료 처 분 내 역	④ 부과기간	⑤ 남부통지서 번 호	⑥ 고지 받은 일자	⑦ 과태료 금액	⑧ 과태료 처분 사유		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	
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 청 인	① 성명	(한자)	② 주민등록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
	③ 주소																										
과태료 처 분 내 역	④ 부과기간	⑤ 남부통지서 번 호																									
	⑥ 고지 받은 일자	⑦ 과태료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
	⑧ 과태료 처분 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4">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</th> </tr> <tr> <th rowspan="2">신 청 인</th> <th>① 성명</th> <th>(한자)</th> <th>② 주민등록번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3">③ 주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4">과태료 처 분 내 역</th> <th>④ 부과기간</th> <th>⑤ 남부통지서 번 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⑥ 고지 받은 일자</td> <td>⑦ 과태료 금액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⑧ 과태료 처분 사유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			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				신 청 인	① 성명	(한자)	② 주민등록번호	③ 주소			과태료 처 분 내 역	④ 부과기간	⑤ 남부통지서 번 호	⑥ 고지 받은 일자	⑦ 과태료 금액	⑧ 과태료 처분 사유		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	
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 청 인	① 성명	(한자)	② 주민등록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
	③ 주소																										
과태료 처 분 내 역	④ 부과기간	⑤ 남부통지서 번 호																									
	⑥ 고지 받은 일자	⑦ 과태료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
	⑧ 과태료 처분 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오수·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 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. 니 <u>비송사건절차법</u>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>신청인 : (인)</p> <p>마포구청장귀하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「하수도법」 제 조 제 항의 규 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 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「비송사건절차법」 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>신청인 : (인)</p> <p>마포구청장귀하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	개 정 안	
<별지 제7호 서식>		<별지 제7호 서식>	
<p>제 호</p> <p>수 신 :</p> <p>발 신 : 마포구청장(인)</p> <p>제 목 :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통보</p> <p>1. <u>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</u> 제 조와 관련합니다.</p> <p>2. <u>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</u>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,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<u>비송사건절차법</u>의 규정에 의거 통보합니다.</p>		<p>제 호</p> <p>수 신 :</p> <p>발 신 : 마포구청장(인)</p> <p>제 목 :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통보</p> <p>1. 「<u>하수도법</u>」 제 조와 관련합니다.</p> <p>2. 「<u>하수도법</u>」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,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「<u>비송사건절차법</u>」의 규정에 의거 통보합니다.</p>	
과 태 료 처분에대한 이의제기자	①성명		②주민등록 번호
	③주소		
과 태 료 처분내역	④고지일자	⑤과 태 료 금 액	
	⑥부과기간	⑦이의제기 일자	
<p>첨 부 : 1.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이의신청서 사본 1부.</p> <p>2. 담당 공무원 의견서 1부. 끝</p>			